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2. 26 선고 2020가단53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고봉민

피고E

변론 종결2021. 2. 5.

판결 선고2021. 2.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6. 4. 3.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분의 1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3,218,9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원인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유효성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재산세 환급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재산세 등의 납부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16028, 21603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87조에서는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F)에서 1996. 4. 3.경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 A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A가 위와 같이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원고들의 피상속인이었던 망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기 때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과 원고 A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소요한 비용 상당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가 위 소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노승욱

별지